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391/4 / 전송 731-6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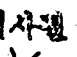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개58533-492

시행일자 1993. 3. 23.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준영구	3.23	
주택국장	전결		
주택개발과장		법무담당관 	
개발2계장		외계심사계장 	
기안	한유석	개발계획계장 	협조

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1. 우리시관내 용산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하여 93.3.5-3.11(7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93.3.11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93.3.18 도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2지구 공동주택(아파트 13-14층) 건립계획안이 남산경관보존과 관련 부적합하여 부결되었는 바, 이에 따라 변경수립한 개선계획안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공고일로 부터 7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반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 가.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별첨)
-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1회 게재
- 다. 공람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
- 라. 공고예산

1) 예산액 : 477,400원

2) 산출근거 : 2단 x 7cm x 31,000원 x 1.1(부가가치세) = 477,400원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사무비, 사무관리, 기본경상비, 수송비 및 수수료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언론협회의 청구에 의거 직불



첨부 1. 공고안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안 1부. 끝.

원본대조필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391/4 / 전송 731-6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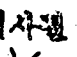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개58533-492

시행일자 1993. 3. 23.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준영구	3.23	
주택국장	전결		
주택개발과장		법무담당관 	
개발2계장		외계심사계장 	
기안	한유석	개발계획계장 	협조

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1. 우리시관내 용산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하여 93.3.5-3.11(7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93.3.11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93.3.18 도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2지구 공동주택(아파트 13-14층) 건립계획안이 남산경관보존과 관련 부적합하여 부결되었는 바, 이에 따라 변경수립한 개선계획안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반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 가.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별첨)
-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1회 게재
- 다. 공람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
- 라. 공고예산

1) 예산액 : 477,400원

2) 산출근거 : 2단 x 7cm x 31,000원 x 1.1(부가가치세) = 477,400원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사무비, 사무관리, 기본경상비, 수송비 및 수수료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언론협회의 청구에 의거 직불



첨부 1. 공고안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안 1부. 끝.

원본대조필 

(제 2 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신문 광고 의뢰

1. 별첨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6조 1항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광고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고내용 : 광고안 참조(별첨)

나. 광고방법 : 일간신문 1회 게재

다. 공람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

라. 광고예산

1) 예산액 : 477,400원

2) 산출근거 : 2단 x 7cm x 31,000원 x 1.1(부가가치세) = 477,400원

3)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사무비, 사무
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및 수수료

4) 지출방법 : 공고후 국제문화협회 청구에 의거 직불

첨부 1. 광고안 3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제 3 안)

수신 용산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안 공람공고및 주민의견청취 통보및 지시

1. 주택58533-445호(93.3.20)와 관련임.

2. 귀구관내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을 위해 별첨과 같이 공람공고하였음을 통보하니 지구내 토지등의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이 직접얼람할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동기간중 접수된 의견을 구청장
의견첨부하여 93.3.31. 한 보고할것.

원본대조필

- 첨부 1. 공고문 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업무협의

1. 주개58533-339호(93.3.13)와 관련임.
2. 우리시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협의 요청하니 귀부서의 검토의견을 93. 3. 27. 한 회시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회시가 없을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협의대상지구

지 구 명	위 치	면적(m ²)	시 행 방 법	지구지정근거
용산재1	용산구 용산2가동 1일대	18,926	현지개량 (단독및다세대 주택건립) ※단독주택59동 ※다세대주택 3층23동260세대	건설부고시 제175호 (91. 4. 2)

- 첨부 1. 주거환경개선계획안 1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수신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원본대조필 

(공 고 (안))

심사	1993. 3. 24	제 85-호
담당	도시계획과	주담담당
이 하 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93- 69 호

주거환경개선계획(안) 공람공고

우리시 용산제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을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제2항및 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계획(안)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본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1993. 3. 24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기간 : 1993. 3. 24. - 3. 31. (7일간)

나. 공람내용

지구명	위치	면적 (㎡)	시행방법	공람및의견서제출장소
용산제1	용산구 용산2가동 1일대	18,926	현지개량 (단독및다 세대주택건 립)	용산구청 주택과

다.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원본대조필